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2002. 6. 14.



공 주 시
환 경 관 리 공 단
(가칭) 공 주 환 경 주 식 회 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정 의)	2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9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9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0
제 6 조 (소유권의 귀속)	10
제 7 조 (출자자의 변경)	10
제 8 조 (법령의 차별적 변경)	11

제 3 장 실시절차

제 9 조 (협약의 효력)	11
제 10 조 (법인설립과 출자)	11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11
제 12 조 (행정절차 추진)	12

제 4 장 사업비

제 13 조 (총 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	12
제 14 조 (총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및 원인가부담금)	13
제 15 조 (총 사업비의 변경)	14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6 조 (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15
제 17 조 (위험물)	15
제 18 조 (유물)	16
제 19 조 (보상업무)	17
제 20 조 (공사비)	17
제 21 조 (공사기간)	17
제 22 조 (공사의 착수)	18
제 23 조 (공정관리)	18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	19
제 25 조 (지체상금)	20
제 26 조 (보험가입)	20
제 27 조 (공사 도급 계약)	21
제 28 조 (민원처리)	21
제 29 조 (건설중의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22
제 30 조 (권한의 위임)	23
제 31 조 (공사위탁관리)	23
제 32 조 (현장 관리 책임자)	24
제 33 조 (준공검사)	24
제 34 조 (준공전 사용)	25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운전 및 유지관리)	26
제 36 조 (보증수질, 기타 준수사항)	27
제 37 조 (하수량 자료제출)	27
제 38 조 (책임)	28
제 39 조 (운영비용)	28
제 40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29

제 7 장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 41 조	(추정하수량 및 추정사용료 수입)	29
제 42 조	(사업수익률)	29
제 43 조	(무상사용기간)	30
제 44 조	(최초사용료)	30
제 45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지급)	31
제 46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31

제 8 장 위험의 배분

제 47 조	(위험배분의 원칙)	33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33
제 49 조	(공주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34
제 50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35

제 9 장 공주시의 지원

제 51 조	(재정지원)	36
제 52 조	(대체사업 보상)	38
제 53 조	(정책적 지원)	38

제 10 장 불가항력 사유

제 54 조	(책임부담)	39
제 55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39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56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0
제 57 조	(협약의 중도해지)	41

제 58 조 (매수청구권)	43
제 59 조 (해지시 지급금)	43
제 60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44
제 61 조 (협약종료후 해지시 지급금등의 지급 완료시 효과)	46
제 62 조 (본 사업기간 종료 또는 협약 사전 종료시의 이양)	48
제 63 조 (반환검사)	48

제 12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64 조 (양도)	49
제 65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추천)	49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66 조 (분쟁의 해결)	50
-----------------------	----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67 조 (비밀유지)	51
제 68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51
제 69 조 (문서의 우선순위)	51
제 70 조 (자금차입등과 공주시의 협조)	52
제 71 조 (준거법)	53
제 72 조 (권리의무의 귀속)	53
제 73 조 (협약의 변경)	54
제 74 조 (공주시의 협약 준수 의무)	55
제 75 조 (일부무효)	55
제 76 조 (경과조치)	55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아래 정의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공주시와 환경관리공단 및 가칭 공주환경주식회사는 본 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아래 정의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그 기본취지에 의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2년 6월 14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아래 정의됨)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아래 정의됨)에 따라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주시와 환경관리공단 및 가칭 공주환경주식회사 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시 그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다.
 1. 유구하수처리장
 - 1)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287-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3,400m³/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L = 8,827m, D = 300~500mm의 차집관거

2. 공암하수처리장

1)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09-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1,800m³/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L = 7,423m, D = 80~350mm의 차집관거

3. 동학사하수처리장

1)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84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1,800m³/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L = 3,751m, D = 300~350mm의 차집관거

제 2 조 (정의)

① 본 협약상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민간투자법령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건설기간 :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6586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공사를 최초 시작하는 날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써 본 협약 제21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5. 공사도급계약 : 본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들 간에 체결되는 본 시설과 관련한 공사를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6. 공사비 : 본 시설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를 의미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공사착수일 : 실시계획 승인 후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날을 의미한다.
8. 공사준공일 : 준공확인필증상에 기재되는 준공년월일을 의미한다.
9. 공주시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시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0. 공주시장 : 공주시의 시장을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1. 공주환경주식회사 : 문맥 여하에 따라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본 협약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음)를 의미한다.
12.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13.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4. 국·도비보조금 : 중앙정부지원금과 충청남도가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15. 금융완결 :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포함한 차입금 인출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16. 대리은행 :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7.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들)상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들) 또는 연기금(들)을 의미한다.
18.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으로서 제43조에 규정

된 기간을 의미한다.

19. 물가변동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2001. 10. 2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본 시설의 준공시까지의 물가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총사업비의 변경분을 의미한다.
20.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636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1. 민간투자법령 :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22.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09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2-5호(2002. 5. 10.)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특정된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의미한다.
25. 본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6. 본 사업부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의미한다.
27. 본 시설 : 본 사업의 대상인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을 의미한다.
28.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29. 부속시설 :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능 발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집관거, 중계펌프장, 기타의 공작물등 보조기능 시설을 의미한다.
30. 분기 :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4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9월30일,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각의 기간을 의미한다.
31. 불가항력 : 협약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50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

32. 사업계획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1월 23일자로 공주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내용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3. 사업년도 :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단, 운영종료연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실제 운영이 종료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34. 사업수익률 : 공주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35.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공주환경주식회사(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36.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공주환경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7. 사용료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주시에 청구하는 금액으로서 본 시설의 운영(유지관리비) 및 사업시행자의 총 민간사업비에 대한 회수비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38. 사용료 수입 : 사업시행자가 공주시에 청구하여 수령한 사용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39.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 법률 제6590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0.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한다.
41. 시공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42. 시설물안전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9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3. 시설사업기본계획 : 공주시 고시 제2001-90호(2001. 10. 25.)에 의한 공주시 유구 · 공암 · 동학사 하수도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4.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공주시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5.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하여 공주시로부터 본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실제로 본 시설을 운영하고 하수를 처리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본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실제로 본 시설을 운영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46. 원인자부담금 : 대한민국 법률 제6451호 하수도법 제32조에서 정의한 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47. 위탁수수료 :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본 시설의 설치지원 및 수탁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 및 기타의 자(중앙정부, 충청남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48. 위험물 :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49. 유관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 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및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50. 유물 : 대한민국 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의미한다.
5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환경관리공단의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관재 0813-1558, 1999. 6. 30.)을 의미한다.

52.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3. 자금차입계약(들) :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등이 체결한 계약(들)을 의미한다.
54. 전력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5. 전문기관 : 회계법인 또는 평가법인 등으로서 수시로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56. 제세공과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와()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57. 준공전 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공주시로부터 본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시설의 사용을 위한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58. 중앙정부 :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59.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60. 총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8가지 항목을 의미하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61. 총선순위채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에 투입한 타인자본(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 포함)으로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 채무원리금(자금차입계약(들)에 따른 수수료 등 포함)을 의미한다.
62. 추정하수량 : 사업시행자가 추정한 연차별 하수수요로서 본 협약 제41조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하수량을 의미하며, 그 내역은 부록 [8]과 같다.

63. 출자자 :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64. 충청남도 : 대한민국법에 의한 자치단체로서의 충청남도를 의미한다.
6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6198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6. 하수도법 : 대한민국 법률 제6451호 하수도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7. 하수량 : 본시설에서 처리되는 연차별 하수 총량을 의미한다.
68. 협약당사자 : 공주시와 환경관리공단 및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69. 환경관리공단 : 대한민국 법률 제5914호 환경관리공단법(개정법률포함)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공주시로부터 본 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 및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기간 중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70.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71. 환경시설설치지원및수탁운영사업수수료산정에관한규칙 : 2000. 4. 14.자로 개정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및수탁운영사업수수료산정에관한규칙(이하 "수수료 규칙"이라고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에서 명시된 모든 계약, 협약 및 서류들은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된 모든 계획, 법률 및 시행령, 규칙 및 고시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고, 본 협약 체결 후 개정이 있을 경우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 ③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 충청남도, 공주시, 사업시행자, 시공자, 환경관리공단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 및 제3자 등은 그의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주시는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가칭)공주환경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부여한다.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공주시는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에 규정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본 시설의 무상사용 및 수익
4. 무상사용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에 의한 본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의 청구 및 수령
5.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주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②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주시는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단, 본 사업이 당초의 사업계획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와 협의하여 그 위험의 배분,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제 6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공주시에게 귀속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43조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공주시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제 7 조 (출자자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본 사업의 전기간에 걸쳐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 출자자가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및 당해 출자자는 이에 대하여 공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의하여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가지는 지분율이 변경되거나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변경 또는 어느 출자자의 계열

회사간의 지분이전의 경우에는 공주시장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변경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법령의 차별적 변경)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행정계획, 공주시 및 유관기관의 지도, 지시나 행정지침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는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제 9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법인설립과 출자)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후 6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자 및 그 지분율은 부록[3]과 같이 동부건설(주) 41%, 대림산업(주) 22%, 현대모비스(주) 22%, 벽산엔지니어링(주) 10%, (주)우석종합건설 5%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출자자가 그 지분율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 납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설계자문 및 설계보완기간이 포함

된 것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공주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사업비, 사용료 기타 본 협약상 실시계획 승인시 조정, 정산, 산정하거나 결정할 사항들은 각 해당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 정산, 산정 또는 결정하며, 협약당사자는 그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수용한다.

제 12 조 (행정절차 추진)

- ① 민간투자법 제17조 및 제21조에 규정한 행정절차 이외의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공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지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관계도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공주시장의 행정절차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 업 비

제 13 조 (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 [1]과 같이 금 33,201백만원(2001. 10. 25.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총 민간사업비는 금 19,429백만원(2001. 10. 25.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총사업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 ① 공주시는 부록 [5], [6],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방식은 공사기간 중 사업진행에 따라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53%를 중앙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5년 동안 공주시에서 균등분할상환하며, 충청남도 지원금은 공사준공 후 20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균등분할상환하여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가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5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② 공주시는 제1항에서 정한 국·도비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매년도 6월 말일까지 공주시장에게 다음 사업년도에 필요한 국·도비보조금의 내역에 관한 사항을 견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총사업비의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지급시기는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매분기말에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전월말까지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④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법인세 기타 이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세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동 세금액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교부시 함께 지원한다.

제 15 조 (총사업비 변경)

①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현저한 물가변동에 의한 총 사업비의 변경.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 사업비의 변경 기준일은 2001. 10. 25.로 한다.
2. 제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3. 관련법령이나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4.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설계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요구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 기타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감되거나 또는 비목이 소멸 또는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2. 관련법령 및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감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3. 불가항력 사유, 기타 공주시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감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③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의 발생 또는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변경집행내역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④ 본 협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또는 제2항에 규정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주시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와 본 사업시행자간의 협의하에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동금액은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로 한다.

- ⑥ 총사업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총사업비의 증가가 제49조에서 정한 공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주시가 재정지원(보조금 교부)하며, 본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50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6 조 (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

- ① 공주시는 본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주시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어떠한 지급금이나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 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7 조 (위험물)

- ① 협약당사자들이 본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는 이를 즉시 공주시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주시와 사업시행자는 관련 인허가 및 법률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중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주시나 유관기관이 행하는 본 사업부지에의 출입에 대한 편의제공 기타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가 별도 협의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용료 산정시 반영하거나 재정지원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로 인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제 18 조 (유물)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 공주시 또는 유관기관에 유물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물을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물이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유물 발견 사실 통지 이후 15일 이내에 동 유물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유물 발굴은 공주시 및 유관기관의 감독 및 참여 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유물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유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협약 당사자가 별도 협의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용료 산정시 반영하거나 재정지원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유물로 인하여 공사의 지연

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제 19 조 (보상업무)

- A ①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 등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토지보상, 손실보상, 지장물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 등은 공주시가 시행한다. 단,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 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보상비는 본 협약 부록 [1] 및 부록 [2]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차집관 거용 부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실집행된 금액으로 정산한다.
- ③ 공주시의 토지매수 등 보상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제8장(위험의 배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0 조 (공사비)

- ① 본 협약체결시 총 공사비는 금 28,133백만원(VAT별도)으로 한다. 이때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2001. 10. 25.)로 한다.
- ② 공사비의 변경은 본 협약 제15조(총사업비(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각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및 우기·동절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준수를 위하여 공사를 중지한 기간은 그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유, 공사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지연 등 중앙정부, 공주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나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③ 예산 미확보 등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 공주시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총 민간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 22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주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공사를 착수하되,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착수하며, 공주시의 요구로 동 보상 완료 이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공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를 연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전 5일 이내에 부록 [14]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 후 착공계 제출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 등 각종계획을 수립하여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공정관리)

- ① 공주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총사업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공주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 30일 한도 내에서 사업이행보증금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공주시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시설에 관하여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된 경우, 공주시는 제 1항의 현금, 이행보증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주시가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그 후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주시에 제공하거나 또는 증액된 이후의 전체 사업이행보증 대상금액에 관하여 제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주시에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과 대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추가되는 사업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인정한다.

제 25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의 공사 완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완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공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각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공사완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완공일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공사비(단, 기성부분으로 독립적인 기능발휘가 가능하다고 공주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기성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지체상금의 총액은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본 협약 제21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완공 예정일 이후부터 부과한다.
- ③ 공주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이행지체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서 누적된 지체상금의 총액이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공주시장은 누적지체상금의 총액 또는 사업이행보증금 중 어느 하나를 공주시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6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보험 중 본 협약 부록 [13]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공주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공사도급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자들을 시공자로 한 공동이행 내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환경관리공단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통과한 업체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의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시공자의 변경 시에는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공사의 하도급 금액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④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 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공단은 기성검사 완료 후 공주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 ⑥ 사업시행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포함한 시공자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28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보상, 영업손실보상, 본 사업의 위치 변경 등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제외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2. 시공민원 :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본 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민원은 공주시가 직접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공주시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본 시설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공민원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공주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할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 29 조 (건설중의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시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 (권한의 위임)

공주시장은 건설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며, 환경관리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1.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확정(설계 및 시공기준 결정 포함)
2.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준공확인
3.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이나 시공재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
4.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기간 동안 지도감독 및 제반 인, 허가 이행 지원
5.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시설 시범사업시행 협약에서 정한사항(부록 [18] 참조)
6. 기타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항

제 31 조 (공사위탁관리)

- ① 본 사업과 관련된 설계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주시장의 위탁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의 위탁수수료는 수수료규칙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적용된 추정공사비 금액에 수수료율표상의 공사관리 감독의 항목 요율을 곱하여 확정한다.
- ② 환경관리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에 준하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③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본 조 제2항에 의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세부 업무내용과 그 절차는 건설교통부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간한 감리업무수행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감독업무수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주시장에게 감독 업무현황과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

변경 및 공사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등을 공주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 분기별 위탁수수료를 매분기 종료 전월말일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업시행자의 예치예정일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 위탁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공주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예치한 위탁수수료예치 수수료 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청구한 분기별 위탁수수료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주시장과 환경관리공단의 공사 감독과 관련된 본 협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현장관리책임자)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현장관리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되는 현장관리책임자는 당초 배치된 직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시운전 1개월 전에 사업시행자 및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종합시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서 규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부록 [15] 서식에 의해 작성한 준공보고서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준공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민간투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다음, 준공검사조서를 공주시장에게 송부하고 부록 [16]서식의 준공확인필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주시장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등록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즉시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운영개시일 이전에 공주시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사용료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시설을 조기 준공하는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준공 전 사용)

공주시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33조에 규정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주시장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준공전 사용인가 여

부를 결정한다.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운전 및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시설 준공 후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시설을 운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외의 지선 관거 및 기존 차집관거의 유지보수와 관리는 공주시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시운전 착수전까지 본 시설과 연결되는 지선관거의 설치완료를 공주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규정한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른 연장기간 포함) 3개월 전까지 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주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말까지 다음 년도의 유지, 보수 및 관리계획을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공주시장이 본 시설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키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조건 등을 사전에 공주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36 조 (보증수질, 기타 준수사항)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부록 [17]의 보증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 운전방법의 조정, 시설·장비의 점검개수 등을 통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공주시는 보증수질 기준 초과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유입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입량이 일일최대유량 또는 시간최대유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유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37 조 (하수량 자료제출)

사업시행자는 매월별로 공주시에 본 시설에 대한 유입/유출 하수량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주시는 하수량의 확인, 검침을 실시한다.

제 38 조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법령위반, 수질기준 초과, 시설운영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부과된 벌금, 부과금, 과태료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는 별도로 보증수질 초과 등의 경우에 그 정도와 기간·횟수에 따라 부록 [17]에 정해진 규제조치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39 조 (운영비용)

- ① 본 협약 체결시 운영비등의 내역은 부록 [10]에 정한 바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동 비용에 상응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을 하기로 한다.
 1. 본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주시의 요청 또는 공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증가한 경우
 2. 무상사용기간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3.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4. 시설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동되는 등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매 사업년도의 운영비용은 부록[11]과 같으며, 직전 사업년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공주시는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른 운영비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3월말까지 당해 사업년도의 지출계획서와 운영비 등 집행내역서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사용기간 중 본 시설을 이용하여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인·허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공주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 41 조 (추정하수량 및 추정사용료수입)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본 시설의 추정하수량 및 추정사용료수입은 부록 [8], [9]에 제시된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하수량 및 추정사용료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제 42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률로서 6.53%로 한다.

제 43 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시설의 조기준공시에는 제33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확정하고 운영개시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그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완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 본 협약에서 조기준공으로 운영하는 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하여 "운영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위 공사완공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시설의 조기 준공의 경우 적용하게 될 사용료는 본 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기준공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료는 공주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④ 본 사업기간 동안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은 당해 불가항력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본 협약상의 의무준수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제 44 조 (최초사용료)

- ① 최초사용료는 본 협약 제42조의 사업수익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함수관계식에 근거하여 부록 [9]와 같이 산정하되, 기준시점인 2001년 10월 25일부터 운영개시일까지 기간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하여 운영개시일 30일 전까

지 산정한다.

- ② 본 협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최초사용료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의 적용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세법상의 해석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해석에 따라 함수관계식을 재계산하여 사용료를 재산정 하기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설계변경등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체결시의 재무모델을 근거로 하여 준공시점에서 위 변경사항 및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최초사용료를 확정하기로 한다.

제 45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지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에 유입되는 매월의 하수량을 계량(검침)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익월 7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이내에 공주시에 청구하기로 하며, 공주시는 동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② 공주시가 사용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지급기간 종료 익일부터 제51조 제3항에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사용료 수입이 당해 시점에서 누적 계산된 추정사용료 수입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소 사용료 수입 보장범위에 관하여 본 협약 당사자 사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주시에 대하여 초과사용료 수입 상당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실제 투입된 처리비용 등 운영비는 실비로 공주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제 46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 ①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그 때 사업

년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을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공주시장과 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도 3월 15일까지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4월 1일부터 본 조에 의하여 조정된 사용료를 청구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 제51조의 재정지원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 실제사용료수입이 제41조에 규정한 추정사용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 무상사용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공주시의 귀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비용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9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제3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제19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조정에 우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한다.
- ④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며, 협약당사자 쌍방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사용료를 본 협약에 따른 사용료로 인정하기로 한다. 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협약당사자 쌍방이 균등 부담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동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산정결과를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위험의 배분

제 47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50조에 정한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주시와 사업시행자간 별도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부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수입의 보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공주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에 의한 누적지체상금이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거나 제36조에 의한 보증수질기준 초과 등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연간 위약금 총액이 연간운영비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공주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공주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중앙정부 또는 공주시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에 의한 요구)로 인하여 공사용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에 대한 몰수
 4. 공주시의 보상업무 등이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민원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함

5. 공주시의 요구나 방침 등(사용료의 감면 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에 의한 본 사업 시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7. 본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처리절차의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공주시의 명시적인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보상으로서 재정지원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 50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2. 전염병, 전쟁 또는 사변, 타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4. 민간투자법령 이외의 법령의 개정
5. 중앙정부 또는 공주시의 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자금차입계약(들)상의 대출금이 조기회수되고 60일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당해 위험을 분담 처리한다.

1. 공사기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당해사유 발생 시점부터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공주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주시의 재정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추가자금조달을 결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자금조달한 부분은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이를 보전하기로 한다.

2. 무상사용기간 중인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이를 무상사용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공주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주시의 재정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추가자금조달을 결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자금 조달한 부분은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이를 보전하기로 한다.

③ 공주시는 공주시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④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 본 협약 제55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9 장 공주시의 지원

제 51 조 (재정지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그 소요자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1. 사업시행자의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당해연도 실제사용료수입이 제41조에 규정한 추정사용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미달분(추정사용료수입 X 0.9 - 매 회계연도말 기준 실제사용료수입)에 해당하는금액

2. 제46조 제3항 제3호 단서의 경우 또는 동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용료의 조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제57조의 협약 중도해지 요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실제 공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의한 적정가치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② 공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지원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최초로 도래하는 예산편성시(추가경정예산 포함)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 지급하도록 한다.

8-109

③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재정지원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기간종료일로부터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기간종료일 이전 2영업일 현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신용등급 A+인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등 그 영속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의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3년 만기채가 고시되지 않는 등 영속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기간물중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 대체되며, 본 협약에서 동일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공주시는 본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 당해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기타 이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세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동 세금액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함께 지원한다. 단, 사용료 수입보장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대체사업 보상)

공주시는 본 사업기간 중 본 시설 인근에 본 시설 하수처리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설(본 협약체결시 기계획된 경우 제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기존시설의 확장이나 본 시설로의 하수 유량 증가로 인하여 본 시설의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협약당사자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 53 조 (정책적 지원)

- ① 공주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을 위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인, 허가 등 관련기관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② 공주시는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수분리계획 및 시공을 본 공사완공 시점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주시는 본 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④ 공주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부지 내의 국, 공유재산을 본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불가항력

제 54 조 (책임부담)

- ①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및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협약당사자의 의무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 55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 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통지)를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본 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고가능 시점에 보고지연 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통지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분쟁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66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항력 분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공주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 ⑥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 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를 지연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얻은 추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제 56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공주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공주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공주시장에게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기로 한다. 다만, 점검결과 본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 시설의 기능개선, 개량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소요비용은 공주시에서 부담한다.
3. 시설물의 점검기준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되는 대수선비의 항목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공주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주시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주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7 조 (협약의 중도해지)

- ① 공주시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에 대한 서면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 공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사업기간 중에 본 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본 시설의 하수처리량에 현격한 변동이 있어 제52조에 따른 손실보

상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본 협약 제19조에 따른 공주시의 보상업무가 현격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에 정한 공주시의 의무 또는 지원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주시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공주시가 국·도비보조금 지급 등 본 협약상 공주시의 지원 또는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5. 기타 공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한 본 사업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④ 불가항력의 발생으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느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방안 및 본 협약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내에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해지사유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

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주시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⑦ 상대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⑧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66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 58 조 (매수청구권)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본 협약 제57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가액은 본 협약 제59조 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 59 조 (해지시 지급금)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공주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장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 본 사업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부록 [12]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공주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100%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 [12]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공주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 [12]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본 사업 시설물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 민간사업비를 해지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투입시점부터 중도해지시점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동 환산액에 사업수익율을 해당기간 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 민간사업비 합계액을 의미한다.

제 60 조 (해지시 지급금 등의 조정 및 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공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시설이 매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시설의 복구나 보상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시설이 매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공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공주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의 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인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의 산정을 의뢰 받은 후 가능한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 쌍방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적정가치를 인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공주시는 전문기관의 위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지급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약당사자간에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④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인정 통보일로부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의 실제지급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여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인정통보일 직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 중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되,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⑤ 본 협약에 따라 공주시가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는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 또는 조건 없이, 세금 또는 세금을 이유로 하거나 상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 ⑥ 공주시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공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분쟁중인 금액이 아니어야 하며 공주시는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이 사업시행자의 대주단에 대한 채무보다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로부터 공제하지 않기로 한다.

제 61 조 (협약종료후 해지시지급금 등의 지급완료시 효과)

- ① 본 협약의 관련조항들에 따라 본 협약이 사전종료(중도해지 또는 매수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협약에서 동일하다)되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동 지급금이 지급 완료된 시점에서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배타적 점유권 등 본 사업의 사업시행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공주시 또는 본 협약에 의한 승계인은 본 사업에 대하여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인수하고 취득한다.
- ② 관리운영권이 등록되기 이전에 본 협약이 사전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

업 및 이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공주시에 이전하고, 공주시는 이를 인수하고 취득하며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본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모든 장비 및 기타 자재를 계속적으로 이용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주시 또는 본 협약에 의한 본 사업의 승계인이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④ 본 협약의 종료(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종료라 함은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와 사전종료를 포함한다)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본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모든 전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및 관리, 또는 해지직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 또는 사용중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자산은 공주시에 대가없이 귀속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시 최종 마무리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보수지침서 및 운영지침서를 공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시공자 또는 기계·전기설비에 대해 시공자나 제조업체가 보장하는 모든 혜택이 공주시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 중 사전종료 되는 경우에 있어, 공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주시 또는 본 협약에 의한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을 승계할 때까지 공주시의 관리하에 본 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며 이에 따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한다

제 62 조 (본 사업기간종료 또는 협약 사전종료시의 이양)

- ① 공주시 운영직원의 훈련 -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 1년 또는 공주시가 정하는 기간동안 공주시의 비용으로 공주시가 선임한 운영직원에게 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기간 종료 또는 본 협약 사전종료시 다음 각호에 따라 본 시설의 이양을 수행한다.
 1. 사업시행자는 늦어도 본 사업기간 종료예정일 12개월(본 협약의 사전종료의 경우에는 공주시가 본 시설의 이양을 받기에 필요한 기간) 전에 공주시에 본 사업기간의 종료예정일을 서면 통지하고 본 시설의 이양을 받도록 요청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서면통지시 해지 및 종료에 따른 본 사업 반환요건 및 절차를 공주시에 제출하여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양절차는 공주시 및 사업시행자의 위임된 대표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제 63 조 (반환검사)

- ① 제62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반환요건 및 절차를 공주시가 승인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및 공주시는 동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본 시설물의 예비반환검사를 실시한다.
- ② 무상사용기간 종료 이전 9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자 및 공주시는 반환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본 시설물의 합동검사(반환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 중 사전종료시에는 동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반환검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 ③ 반환 검사 결과 본 시설의 정상적인 제기능(검사실시 기간중의 현재상태)의 유지

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 등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와 사업시행자는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 본 시설의 정상적인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교체는 공주시에서 교체토록 한다.

- ④ 공주시는 반환검사 완료후 50일 이내에 반환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본 시설물이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반환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반환확인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2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64 조 (양도)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에게 본 협약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구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65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공주시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공주시는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사업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공주시는 대체사업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유지, 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기술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천한 대체 사업자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대체사업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대체일 이후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공주시 및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지정일에 존재했던 협약중도해지사유 또는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에 대하여 합의한다.
- ④ 공주시와 대체사업자는 본 조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66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장 기타사항

제 67 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3.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5. 본 시설의 설치, 운영업무를 주관, 관리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에 의한 공개
- ③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제 68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69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한 부록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이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령
 2. 본 협약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4. 시설사업기본계획

제 70 조 (자금차입 등과 공주시의 협조)

- ①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행에 있어 국내, 외 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공주시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설정해 주며,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공주시는 본 사업기간 중 대주단의 대출여부 및 대출조건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유과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은행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아울

러 공주시는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1. 공사기간
2. 사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
3. 총사업비에 대한 사항
4. 사업수익률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 증가의 경우 그 납입시기와 납입금액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본 시설의 매수청구
7. 사업시행자의 변경

④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이 사전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 7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72 조 (권리의무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그 법인설립절차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공주시는 본 협약에 기한 모든 행위를 사업시행자의 대표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주시가 본 협약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의 대표회사에게 행한 모든 행위는 사업시행자의 각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시행자가 그 법인설립절차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공주시에 대하여 행하는 본 협약에 기한 모든 행위는 그 대표회사를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공주시는 이를 승인한다.

제 73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체결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

정, 변경할 수 있다.

제 74 조 (공주시의 협약준수의무)

공주시는 본 협약이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공주시의 의무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75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6조 (경과조치)

본 협약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촉진을 위한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중앙정부, 공주시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제도개선이 있는 경우, 공주시와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령 및 개선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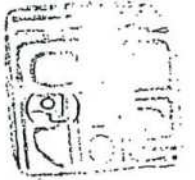
2002 년 6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공 주 시 장 백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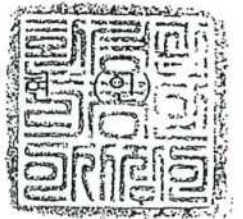
권한대행

훈



대한민국 환경관리공단

이 사 장 이 석




(가칭)공주환경주식회사


대표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백 호 익



사업시행자의 출자회사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

출 자 회 사 동 부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백 호 익 (인) 

출 자 회 사 대 립 산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용 구 (인) 

출 자 회 사 현 대 모 비 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정 인 (인) 

출 자 회 사 박 산 엔 지 니 어 링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양 수 (인) 

출 자 회 사 주 식 회 사 우 석 중 합 건 설
대 표 이 사 박 해 상 (인) 

- 부 록 목 록 -

- 부록 [1]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 부록 [2] 총민간사업비
- 부록 [3] 출자자구성 및 지분율
- 부록 [4] 자금투입계획
- 부록 [5] 중앙정부지원금 지급일정
- 부록 [6] 도지원금 지급일정
- 부록 [7] 원인가부담금 지급일정
- 부록 [8]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하수량
- 부록 [9] 추정사용료 수입
- 부록 [10] 운영비용 총괄
- 부록 [11] 연도별 운영관리비
- 부록 [12] 사용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 부록 [13] 보험가입계획
- 부록 [14] 착수신고서
- 부록 [15]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보고서
- 부록 [16] 준공확인필증
- 부록 [17] 보증수질 및 규제조치
- 부록 [18]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시설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 부록 [19] 재무모델(CD) 3매 (별도첨부)
- 부 록 [20]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협약(안)

부록 [1]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1. 설계비	735	735			
2. 공사비	28,133	1,326	22,713	4,094	
1)순공사비	27,983	1,287	22,638	4,058	
2)건설보험금	150	39	75	36	
3. 보상비	1,942	1,942			
4. 부대비	1,996	337	829	829	
1) 책임감리비	1,843	184	829	829	
2) 환경성검토비	70	70			
3) 사업이행보증보험료	83	83			
5. 운영설비비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395	136	143	116	
1) 창업비	2	2			
2) 개업비	351	105	131	116	
3) 신주발행비	42	30	12		
총사업비 합계	33,201	4,477	23,685	5,039	
8. 예비비(물가변동비)	2,387	140	1,698	549	
9. 건설자금이자	1,359		307	1,052	
10. 금융비용	475	262	189	24	
총투자비 합계	37,421	4,879	25,878	6,664	

※ 총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이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재산정하여 확정함.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부록 [2]

총민간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1. 설계비	735	735			
2. 공사비	15,237	1,326	11,536	2,375	
순공사비	15,139	1,287	11,498	2,354	
건설보험금	98	39	38	21	
3. 보상비	1,942	1,942			
4. 부대비	1,240	337	421	481	
책임감리비	1,087	184	421	481	
환경성검토비	70	70			
사업이행보증료	83	83			
5. 운영설비비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276	136	73	67	
창업비	2	2			
개업비	238	105	66	67	
신주발행비	36	30	6		
총민간사업비 합계	19,429	4,477	12,030	2,923	

※ 총민간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이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재산정하여 확정함.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부록 [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NO	주 주 명	주 주 소	지 분 율
1	동 부 건 설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41%
2	대 립 산 업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22%
3	현 대 모 비 스 (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22%
4	벽산엔지니어링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10%
5	(주) 우석종합건설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6-1	5%
합	계		100%



부록 [4]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투자비	37,421	4,879	25,878	6,664
중앙정부지원금	14,777		12,507	2,270
총민간투자비	22,644	4,879	13,371	4,394
- 자기자본(A)	6,793	4,879	1,914	
- 타인자본(B)	15,851		11,457	4,394
자기자본비율 [A/(A+B)]		100.0%	14.3%	0.0%



부록 [5]

중앙정부지원금 지급일정

(제14조 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 고
2002년	4/4분기			
	소 계			
2003년	1/4분기	1,456	1,562	
	2/4분기	3,269	3,507	
	3/4분기	4,348	4,666	
	4/4분기	2,583	2,771	
	소 계	11,656	12,507	
2004년	1/4분기	1,503	1,613	
	2/4분기	482	517	
	3/4분기	131	141	
	소 계	2,116	2,270	
합 계		13,772	14,777	

※ 중앙정부지원금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이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재산정하여 확정함.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5%반영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부록 [6]

도비보조금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 고
0년차	2004년	45	49	
1년차	2005년	170	197	
2년차	2006년	162	197	
3년차	2007년	154	197	
4년차	2008년	147	197	
5년차	2009년	140	197	
6년차	2010년	133	197	
7년차	2011년	127	197	
8년차	2012년	121	197	
9년차	2013년	115	197	
10년차	2014년	109	197	
11년차	2015년	104	197	
12년차	2016년	99	197	
13년차	2017년	95	197	
14년차	2018년	90	197	
15년차	2019년	86	197	
16년차	2020년	82	197	
17년차	2021년	78	197	
18년차	2022년	74	197	
19년차	2023년	71	197	
20년차	2024년	50	147	
계		2,250	3,931	

<공사기간중 불변가격으로 계산>

구 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 고
합 계	3,664	3,931	
2002년	418	432	
2003년	2,676	2,868	
2004년	569	631	

※ 도비지원금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이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재산정하여 확정함.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5%반영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가격기준일로부터 공사기간 중 확정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20년간 균등 지급함.

부록 [7]

원인자부담금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고
2004년	4/4분기	337	385
	소계	337	385
2005년	1/4분기	333	385
	2/4분기	329	385
	3/4분기	325	385
	4/4분기	321	385
	소계	1,307	1,541
2006년	1/4분기	317	385
	2/4분기	313	385
	3/4분기	309	385
	4/4분기	306	385
	소계	1,245	1,541
2007년	1/4분기	302	385
	2/4분기	298	385
	3/4분기	295	385
	4/4분기	291	385
	소계	1,186	1,541
2008년	1/4분기	288	385
	2/4분기	284	385
	3/4분기	281	385
	4/4분기	277	385
	소계	1,129	1,541
2009년	1/4분기	274	385
	2/4분기	271	385
	3/4분기	267	385
	소계	812	1,156
합계	6,016	7,706	

<공사기간중 불변가격으로 계산>

구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고
합계	7,217	7,706	
2002년	1,510	1,553	
2003년	4,704	5,041	
2004년	1,002	1,112	

- ※ 원인자부담금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이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재산정하여 확정함.
-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5%반영하였고,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가격기준일로부터 공사기간 중 확정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 균등 지급함.

부록 [8]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하수량

(단위: 톤/일)

구분 \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	------	------	------	------	------	------	------	------	------

총괄

-사용료적용하수량	5,077	5,188	5,299	5,420	5,540	5,661	5,781	5,902	6,033	6,165
-----------	-------	-------	-------	-------	-------	-------	-------	-------	-------	-------

1) 유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2,824	2,873	2,922	2,978	3,033	3,089	3,144	3,200	3,241	3,283
-----------	-------	-------	-------	-------	-------	-------	-------	-------	-------	-------

2) 공암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1,630	1,638	1,646	1,652	1,658	1,663	1,669	1,675	1,677	1,679
-----------	-------	-------	-------	-------	-------	-------	-------	-------	-------	-------

3) 동학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623	677	731	790	849	909	968	1,027	1,115	1,203
-----------	-----	-----	-----	-----	-----	-----	-----	-------	-------	-------

구분 \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	------	------	------	------	------	------	------	------	------	------

총괄

-사용료적용하수량	6,296	6,428	6,552	6,621	6,690	6,759	6,828	6,895	6,897	6,899	6,900
-----------	-------	-------	-------	-------	-------	-------	-------	-------	-------	-------	-------

1) 유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3,324	3,366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	-------	-------	-------	-------	-------	-------	-------	-------	-------	-------	-------

2) 공암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1,681	1,683	1,685	1,687	1,689	1,691	1,693	1,695	1,697	1,699	1,700
-----------	-------	-------	-------	-------	-------	-------	-------	-------	-------	-------	-------

3) 동학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1,291	1,379	1,467	1,534	1,601	1,668	1,735	1,800	1,800	1,800	1,800
-----------	-------	-------	-------	-------	-------	-------	-------	-------	-------	-------	-------

부록 [9]

추정사용료 수입

1. 연도별 추정사용료 수입

(단위 : 백만원)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불변가격	483	1,958	1,999	2,045	2,091	2,136	2,181	2,227	2,276	2,326	2,376
경상가격	532	2,266	2,430	2,610	2,802	3,005	3,223	3,455	3,708	3,979	4,266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불변가격	2,425	2,472	2,498	2,524	2,550	2,576	2,602	2,602	2,602	1,947
경상가격	4,574	4,895	5,194	5,510	5,845	6,200	6,574	6,905	7,252	5,696

- * 불변가격은 2001년 10월 25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5% 반영.
-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 백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료결정을 위한 현금흐름의 금액으로 함
- * 소숫점이하금액은 반올림.

2. 기준사용료

사용료 (VAT 별도)
1,034원/톤

- * 2001년 10월 25일 불변가격기준

운영비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생	경상	비고
1. 운영인건비	4,462	8,438	
2. 운영경비	2,389	4,518	
3. 집기비품	202	363	
4. 전력비	2,799	5,391	
5. 약품비	164	317	
6. 슬러지처리비	731	1,411	
7. 침사/협잡물처리비	91	176	
8. 상수도비	15	27	
9. 연료비	103	193	
10. 유지보수비	1,340	2,744	
11. 대수선비	5,014	11,620	
12. 실험실분석비	320	605	
13. 운영기간 중 보험	833	1,459	
총 계	18,463	37,263	

* 2001년 10월 25일 불변가액 기준

* 법인세 제외

* 소숫점이하금액은 반올림.

연도별 운영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불변 가격	운영 비용	181	607	632	655	645	807	766	640	733	629
	법인세									126	219
	합계	181	607	632	655	645	807	766	640	859	84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불변 가격	운영 비용	1,531	614	846	644	668	3,330	710	617	800	615	1,794
	법인세	298	108	416	376	452	448		189	495	453	502
	합계	1,829	721	1,263	1,019	1,120	3,778	710	806	1,295	1,068	2,296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법인세 등은 29.7% 적용(공주시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는 실시협약일 현재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중앙정부지원금, 원인자부담금, 도비지원금은 과세이연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를 계상하였음)

* 백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료결정을 위한 현금흐름의 금액으로 한다.

부록 [12]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년 도	현금 유 출				현금 유 입			
	총자산 사업기	운영비용	현금 유출기	현저가치	사용료 수입	정부 지원금	현금 유입기	현저가치
2002	4,477		4,477	4,202				
2003	12,030		12,030	10,600				
2004	2,923	181	3,104	2,568	483	394	877	725
2005		607	607	472	1,958	1,501	3,459	2,685
2006		632	632	460	1,992	1,430	3,429	2,499
2007		655	655	448	2,045	1,362	3,407	2,331
2008		645	645	414	2,091	1,297	3,387	2,175
2009		807	807	486	2,136	961	3,097	1,867
2010		766	766	433	2,181	133	2,314	1,310
2011		640	640	340	2,227	127	2,354	1,250
2012		859	859	428	2,276	121	2,397	1,195
2013		848	848	397	2,326	115	2,441	1,143
2014		1,829	1,829	804	2,376	109	2,485	1,092
2015		721	721	298	2,425	104	2,530	1,043
2016		1,263	1,263	489	2,472	99	2,572	996
2017		1,019	1,019	370	2,498	95	2,593	942
2018		1,120	1,120	382	2,524	90	2,614	892
2019		3,778	3,778	1,210	2,550	86	2,636	844
2020		710	710	213	2,579	82	2,658	799
2021		806	806	227	2,602	78	2,679	756
2022		1,295	1,295	343	2,602	74	2,677	709
2023		1,068	1,068	265	2,603	71	2,674	665
2024		2,296	2,296	536	1,947	50	1,998	466
합 계	19,429	22,544	41,974	26,387	46,900	8,378	55,278	26,387

* 2001년 10월 25일 불변가격 기준이나, 물가상승률은 2001년 4/4분기를 적용함.

* 실질할인율은 사업수익률 6.53% 적용

* 소숫점이하 반올림.

보험가입계획

1. 건설기간중

구분	내용	비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보험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목적물 - 공사지연에 따른 예정이익상실(A.L.O.P)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사용자에게 대한 배상책임(E.L)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동상, 작업 잘못, 전기적 사고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 등 - 현장사무소 및 공사용자재 - 공사지연에 따른 예정이익상실(A.L.O.P)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 건설공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초과손해액	전 위험 담보 (All Risk Cover)
담보지역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장 건설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공사착수시점 ~ 공사완공시점	
보험금액	① 공사목적물 : 예정공사금액 ② A.L.O.P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상실분 ③ E.L : 1억원/1인, 2억원/1사고	

2. 운영기간중

구분	내용	비고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기업휴지보험(BI) 3) 영업배상책임보험(C.G.L)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보험목적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① 화재, 폭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등 ② All Risks 담보로 면책조항을 제외한 모든 사고 담보 2) 기업휴지보험(BI보험) ① 영업이익+고정비(Standing Charges)+은행이자 3) 영업배상책임보험(C.G.L) ① 불특정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①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내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휴지보험(BI보험) - 영업이익+고정비(Standing Charges)+은행이자 3)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민사상,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 - 협력비용 등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 사용자배상책임 초과손해액	전 위험 담보
담보지역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보험기간	운영기간	
보험금액	①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 하수처리장 완성시까지 총투입공사비 ② BI보험(휴지보험) : 영업이익 + 고정비(Standing Charges) + 은행이자 ③ C.G.L : 대인 대물 일괄 1사고당 2억원, 연간총보상한도 5억원 부보 ④ EL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부보비율	100%	

부록 [14]

착 수 신 고 서

사 업 명 : 공 주 시 ○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사 업 비 : ○ ○ 억원

실 시 협 약 일 : ○ ○ 년 ○ ○ 월 ○ ○ 일

실시계획승인일 : ○ ○ 년 ○ ○ 월 ○ ○ 일

준공예정년월일 : ○ ○ 년 ○ ○ 월 ○ ○ 일

준 공 년 월 일 : ○ ○ 년 ○ ○ 월 ○ ○ 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 ○ 월 ○ ○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환 경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부록 [15]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보고서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 보고서

① 사 업 명

② 공사의 종류

③ 사업시행위치

④ 사업시행규모

⑤ 사 업 목 적

⑥ 총 공 사 비

⑦ 공 사 기 간

⑧ 국 가 귀 속
사 업 내 용

⑨ 기 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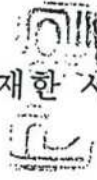
신 청 자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인)

법인 등 기 번 호
법 인 주 소

환 경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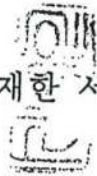
구비서류

1.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준공확인필증

신 청 자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인)
법 인 등 기 번 호
법 인 주 소

귀하가 시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명 (위치):
2. 공 사 의 종 류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목 적 :
5. 공 사 기 간(준공년월일) :
6. 준 공 시 설(국가귀속여부):

200 년 월 일

○ ○ 시 장 (군 수) (인)

부록 [17] 보증수질 및 규제조치

○ 방류수 보증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탁도(NTU)
목표수질 (성능보증수질)	10이하	15 이하	10이하	15이하	2이하	1000이하
법정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1000이하

- 성능보증은 COD의 경우 30일 연속 측정값의 평균치가 목표수질(보증수질) 이내 이어야 하며, T-N의 경우 30일간 15회 이상의 평균측정치가 목표수질 이내이어야 한다 (단, 법정방류수질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정방류수질은 순간측정치이며, 2004년도 강화될 수질기준을 기준한다.
- 질소농도 규제치는 겨울철(12월~3월)에는 기타지역기준을 적용한다.

○ 목표수질 초과에 따른 규제조치

위반회수	처분내용	비고
1~2회 위반	자체원인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위반회수 산정은 최근 1년간 위반을 적용 ○외부점검기관 점검 결과를 포함 적용
3~5회 위반	부록 [11]에서 정한 월 운영비용의 2%를 총액으로 하여 익년도 1년간 균등분할 감액	
6회 이상	부록 [11]에서 정한 월 운영비용의 5%를 총액으로 하여 익년도 1년간 균등분할 감액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도 적용
- 운영비용 지급 시 차감 지급

공주시 유구 및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시범사업 시행 협약서



1998. 3.



환 경 부
공 주 시
환경관리공단



공주시 유구 및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시범사업 시행 협약서

하수도민자유치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공주시 유구 및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의 위임규정 제11조 및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간에 소관별로 업무를 분장 또는 위·수탁하여 하수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하수도시설 설치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수고도처리 등 신기술의 도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민자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 : “민자유치촉진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의의 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주무관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공주시장을 말한다.
3. 시설사업기본계획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유구 및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우선협상대상자 :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그 내용이 관련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최적조건을 제시하여 우선적인 협상대상자로 평가된 자를 말한다.
6. 예비사업시행자 : 우선협상대상자중 최적의 사업시행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시행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7. 실시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구하수종말처리시설>

1. 대상지역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일원
2. 시설용량 : 5,200m³/일
3. 설치사업비 : 158억원
4. 사업기간 : 이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유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

1. 대상지역 : 공주시 반포면 봉암리 일원
2. 시설용량 : 11,000m³/일
3. 설치사업비 : 140억원
4. 사업기간 : 이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관별 임무) ①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공주시장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환경부장관

- 가. 하수도민자사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나. 지방양여금 등 국고지원예산의 편성 및 지원
- 다. 사업추진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및 승인
- 라. 기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추진

② 공주시장

- 가. 지방양여금 등 국고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집행·관리를 위탁
- 나.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작성·요청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 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검토·확정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라. 처리장 및 차집관로 부지확보를 위한 용지보상
- 마. 사업관련 제반 인·허가 업무처리 및 민원사항 해결
- 바. 기타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가. 하수도민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나. 하수도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규정의 제·개정
- 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확정
- 바. 설계용역과 공사에 대한 관리(감리) 및 준공확인
- 사. 공주시장이 위탁한 사업비의 관리·집행 및 정산
- 아.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및 제반 인·허가 이행 지원

②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상호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민자사업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및 하수도공주시장, 환경관리공단 사업이사로 구성하며, 이 협약의 변경에서 정한 기관별 임무의 조정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이견조정 등을 주요임무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민자사업심의위원회는 환경부, 공주시, 환경관리공단의 관계관 및 상하수도, 회계, 법률 등 본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협상계획수립 및 협상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사업시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공주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하수도민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민자유치) 사업시행에 필요한 민자의 유치와 유치액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① 공주시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일체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이 위탁한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책임하에 관리·집행토록 하며, 집행내역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는 공주시장이 위탁한 사업비로 본다.

제8조(수수료기타실비)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대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기타 소요실비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에서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대가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시설건설대행및수탁운영사업수수료산정에관한규칙」 제4조별표1에 의거 산정한 수수료


2. 제1호를 제외한 제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추가수행에 따른 기타 소요실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요실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주시장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민자사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계처리) ① 이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타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자료제출등)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수탁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 추진현황 및 결과를 용역성과품 또는 기타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및 공주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및 공주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며 본 사업실시와 관련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해외출장 수행등)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선진외국의 기술습득 또는 시설 및 기자재 등에 관한 검토 또는 사전검수가 필요한 때에는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험부담) 본 사업수행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협약의 해약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이 협약 당사자 전원이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제14조(기타 협의사항) ① 이 협약의 내용은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기초시설민영화업무처리지침」 ('97.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도민자사업조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모두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의 작성·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공동으로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환경부장관

공주시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부록 [19] 재무모델(CD) 3매 (별도첨부)

3

1

15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협약(안)

2006. 02.

공 주 시
환 경 관 리 공 단
공 주 환 경 주 식 회 사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②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시 그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다.

1. 유구하수처리장

1)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287-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3,400m³/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L = 7,346m, D = 300~500mm의 차집관거

2. 공암하수처리장

1)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09-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1,800m³/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L = 7,396m, D = 80~350mm의 차집관거

3. 동학사하수처리장

1)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은천리 433-184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1,800m³/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L = 5,111m, D = 300~350mm의 차집관거

제 4 장 사 업 비

제 13 조 (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 [1]과 같이 금 32,263백만원(2001. 10. 25.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총 민간사업비는 금 13,375백만원(2001. 10. 25.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총사업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 ① 공주시는 부록 [5], [6],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방식은 공사기간 중 사업진행에 따라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처리장별 정부지원비율 (유구 : 53%, 공암 : 70%, 동학사 : 70%)에 따라 중앙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5년 동안 공주시에서 균등분할상환하며, 충청남도 지원금은 공사준공 후 20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균등분할상환하여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가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5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20 조 (공사비)

- ① 본 협약체결시 총 공사비는 금 28,259백만원(VAT별도)으로 한다. 이때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2001. 10. 25.)로 한다.

제 7 장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 44 조 (최초사용료)

- ① 최초사용료는 본 협약 제42조의 사업수익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함수관계식에 근거하여 부록 [9]와 같이 산정하되, 기준시점인 2001년 10월 25일부터 운영개시일까지 기간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하여 운영개시일 30일 전까지 산정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설계변경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산정시점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6 년 02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공 주 시 장 오 영 희 (인)

대한민국 환경관리공단
이 사 장 이 만 의 (인)

공주환경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염 익 환 (인)

사업시행자의 출자회사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

출 자 회 사 동 부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황 무 성 / 최 헌 기 (인)

출 자 회 사 대 립 산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용 구 (인)

출 자 회 사 현 대 모 비 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한 규 환 (인)

출 자 회 사 벽 산 엔 지 니 어 링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양 수 (인)

출 자 회 사 주 식 회 사 우 석 종 합 건 설
대 표 이 사 박 해 상 (인)

- 부 록 목 록 -

- 부록 [1]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 부록 [2] 총민간사업비
- 부록 [3] 자금투입계획
- 부록 [4] 중앙정부지원금 지급일정
- 부록 [5] 도지원금 지급일정
- 부록 [6] 원인가부담금 지급일정
- 부록 [7]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하수량
- 부록 [8] 추정사용료 수입
- 부록 [9] 운영비용 총괄
- 부록 [10] 연도별 운영관리비

부록 [1]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 고
1. 설계비	717	717					
2. 공사비	28,259		148	5,408	22,314	389	
1) 순공사비	28,102			5,408	22,306	389	
2) 건설보험금	156		148		9		
3. 보상비	905				905		
4. 부대비	1,999	153	3	737	1,106		
1) 책임감리비	1,843			737	1,106		
2) 환경성검토비	70	70					
3) 신문광고비	3		3				
3) 사업이행보증 보험료	83	83					
5. 운영설비비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383	7	159	135	83		
1) 창업비	1	1					
2) 개업비	351		137	131	83		
3) 신주발행비	31	6	21	4			
총사업비 합계	32,263	877	309	6,280	24,408	389	
8. 예비비 (물가변동비)	3,341	18	16	547	2,676	84	
9. 건설자금이자	461				461		
10. 금융비용	375	100	127	31	117		
총투자비 합계	36,440	994	453	6,858	27,662	473	

※ 총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2]

총민간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1. 설계비	717	717					
2. 공사비	10,544		148	3,156	7,115	126	
순공사비	10,394			3,156	7,112	126	
건설보험금	150		148		3		
3. 보상비	905				905		
4. 부대비	939	153	3	430	353		
책임감리비	783			430	353		
환경성검토비	70	70					
신문공고비	3		3				
사업이행보증료	83	83					
5. 운영설비비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270	7	159	78	27		
창업비	1	1					
개업비	240		137	76	27		
신주발행비	29	6	21	2			
총민간사업비 합계	13,375	877	309	3,665	8,339	126	

※ 총민간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3]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투자비	35,967	994	453	6,858	27,662	473
중앙정부지원금	20,729			2,911	17,818	292
총민간투자비	15,552	993	453	4,021	10,085	181
- 자기자본(A)	4,720	993	453	3,274		
- 타인자본(B)	10,832			748	10,085	181
자기자본비율 [A/(A+B)]		100.0%	100.0%	81.4%	0.0%	0.0%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4]

중앙정부지원금 지급일정

(제14조 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비 고
2002년	4/4분기			
	소 계			
200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 계			
200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615	2,911	
	소 계	2,615	2,911	
2005년	1/4분기	3,632	4,042	
	2/4분기	7,914	8,808	
	3/4분기	1,612	1,795	
	4/4분기	2,851	3,174	
	소 계	16,010	17,818	
2006년	1/4분기	263	292	
	2/4분기			
	3/4분기			
	소 계	263	292	
합 계		18,887	21,021	

※ 중앙정부지원금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5]

도비보조금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 고
0년차	2005년			
1년차	2006년	195	238	
2년차	2007년	186	238	
3년차	2008년	177	238	
4년차	2009년	169	238	
5년차	2010년	161	238	
6년차	2011년	153	238	
7년차	2012년	146	238	
8년차	2013년	139	238	
9년차	2014년	132	238	
10년차	2015년	126	238	
11년차	2016년	120	238	
12년차	2017년	114	238	
13년차	2018년	109	238	
14년차	2019년	104	238	
15년차	2020년	99	238	
16년차	2021년	94	238	
17년차	2022년	90	238	
18년차	2023년	85	238	
19년차	2024년	81	238	
20년차	2025년	77	238	
계		2,558	4,752	

※ 도비지원금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가격기준일로부터 공사기간 중 확정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20년간 균등 지급함.

부록 [6]

원인자부담금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비 고
2006년	1/4분기	91	111
	2/4분기	90	111
	3/4분기	89	111
	4/4분기	88	111
	소 계	358	443
2007년	1/4분기	87	111
	2/4분기	86	111
	3/4분기	85	111
	4/4분기	84	111
	소 계	341	443
2008년	1/4분기	83	111
	2/4분기	82	111
	3/4분기	81	111
	4/4분기	80	111
	소 계	325	443
2009년	1/4분기	79	111
	2/4분기	78	111
	3/4분기	77	111
	4/4분기	76	111
	소 계	309	443
2010년	1/4분기	75	111
	2/4분기	75	111
	3/4분기	75	111
	4/4분기	75	111
	소 계	300	443
합 계	1,632	2,215	

- ※ 원인자부담금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2001. 10. 25)
-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가격기준일로부터 공사기간 중 확정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 균등 지급함.

부록 [7]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하수량

(단위: 톤/일)

구분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괄										
-사용료적용하수량	5,299	5,420	5,540	5,661	5,781	5,902	6,033	6,165	6,296	6,428
1) 유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2,922	2,978	3,033	3,089	3,144	3,200	3,241	3,283	3,324	3,396
2) 공암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1,646	1,652	1,658	1,663	1,669	1,675	1,677	1,679	1,681	1,683
3) 동학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731	790	849	909	968	1,027	1,115	1,203	1,291	1,379

구분 \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괄										
-사용료적용하수량	6,552	6,621	6,690	6,759	6,828	6,895	6,897	6,899	6,900	6,900
1) 유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2) 공암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1,685	1,687	1,689	1,691	1,693	1,695	1,697	1,699	1,700	1,700
3) 동학사하수처리장										
-사용료적용하수량	1,467	1,534	1,601	1,668	1,735	1,800	1,800	1,800	1,800	1,800

부록 [8]

추정사용료 수입

1. 연도별 추정사용료 수입

(단위 : 백만원)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불변가격	1,684	1,722	1,761	1,799	1,837	1,876	1,917	1,959	2,001	2,043
경상가격	2,047	2,198	2,359	2,531	2,714	2,910	3,123	3,351	3,593	3,852

년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불변가격	2,082	2,104	2,126	2,148	2,170	2,191	2,192	2,192	2,193	2,193
경상가격	4,122	4,374	4,641	4,923	5,222	5,537	5,815	6,108	6,414	6,735

- * 불변가격은 2001년 10월 25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5% 반영
-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 백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료결정을 위한 현금흐름의 금액으로 함
- * 소숫점이하금액은 반올림.

2. 기준사용료

사용료 (VAT 별도)
870.62원/톤

* 2001년 10월 25일 불변가격기준

부록 [9]

운영비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변	경상	비 고
1. 운영인건비	4,462	8,967	
2. 운영경비	2,389	4,850	
3. 집기비품	202	383	
4. 전력비	2,824	5,763	
5. 약품비	166	341	
6. 슬러지처리비	742	1,518	
7. 침사/협잡물처리비	92	190	
8. 상수도비	14	29	
9. 연료비	103	206	
10. 유지보수비	1,340	2,881	
11. 대수선비	5,014	12,201	
12. 실험실분석비	320	594	
13. 운영기간 중 보험	780	1,457	
총 계	18,449	39,379	

* 2001년 10월 25일 불변가격 기준

* 법인세 제외

* 소숫점이하금액은 반올림.

부록 [10]

연도별 운영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불변 가격	운영 비용	629	632	655	645	807	767	641	734	631	1,532
	법인세						31	146	167	225	
	합계	629	632	655	645	807	767	649	880	798	1,757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불변 가격	운영 비용	615	846	644	669	3,331	710	615	799	613	1,934
	법인세	32	304	268	337	332	2	365	325	396	
	합계	647	1,150	912	1,006	3,663	710	617	1,164	938	2,330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법인세 등은 27.5% 적용

* 백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료결정을 위한 현금흐름의 금액으로 한다.

부록 [11]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년 도	현 금 유 출				현 금 유 입			
	총민간 사업비	운영비용	현금 유출계	현재가치	사용료 수입	정부 지원금	현금 유입계	현재가치
2002	877		877	823				
2003	309		309	273				
2004	3,665		3,665	3,031				
2005	8,399		8,399	6,521				
2006	126	629	755	551	1,684	560	2,244	1,635
2007		632	632	432	1,722	533	2,256	1,543
2008		655	655	421	1,761	508	2,268	1,457
2009		645	645	389	1,799	484	2,283	1,376
2010		807	807	457	1,837	461	2,298	1,300
2011		767	767	407	1,876	153	2,029	1,078
2012		649	649	324	1,917	146	2,063	1,029
2013		880	880	412	1,959	139	2,098	982
2014		798	798	350	2,001	132	2,133	937
2015		1,757	1,757	725	2,043	126	2,169	895
2016		647	647	251	2,082	120	2,202	853
2017		1,150	1,150	418	2,104	114	2,218	806
2018		912	912	311	2,126	109	2,235	762
2019		1,006	1,006	322	2,148	104	2,252	721
2020		3,663	3,663	1,101	2,170	99	2,268	682
2021		710	710	200	2,191	94	2,285	645
2022		617	617	163	2,192	90	2,281	604
2023		1,164	1,164	289	2,192	85	2,278	566
2024		938	938	219	2,193	81	2,274	531
2025		2,330	2,330	510	2,193	77	2,270	497
합 계	13,375	21,355	34,730	18,900	40,188	4,215	44,403	18,900

* 2001년 10월 25일 불변가격 기준이나, 물가상승률은 2001년 4/4분기를 적용함.

* 실질할인율은 사업수익률 6.53% 적용

* 소숫점이하 반올림.